

[홍익여학] 성폭력 학칙제정관련... 10/30

홍익에서도 고민을 하고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간단하게나마 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

#왜 학칙개정인가?

====>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가시적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국민대에서는 학교 교수에 의한 강간사건이 일어났다.
집에 가려는 여학우-제자를 여관까지 데려가 음란 비디오를 틀고 강간을 한 사건이었다. 여학우는 그 사건을 총여에 알리고 총여와 함께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하였고 설문조사, 송교수 수강신청 거부 등의 활동들을 펼쳐 나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측은 대자보 철거, 송교수의 휴직중용 - 휴직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범에 의한 성폭력을 재발한다. 부산교대체육과 교수의 성추행 사건은 대표적인 예이다.- 등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또한 법적인 판결만을 기다리며 문제 축소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도 마찬가지이다.)이 학교측의 무성의, 심지어 방해 행동으로 문제해결이 늦추어 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가부장제가 뿐리 깊은 한국 사회의 법 판결을 - 그것도 3~4년 걸리는 테다가 기약까지 없는..... 주로 법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학교측과 같이 논의할 시간을 의미한다.-

기다린다거나 학교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해 주길 기다리느니 학내의 일은 학칙 제정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 여학우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처벌규정을 분명하게 문서화함으로써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범죄 예방과 학내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이 반드시 가해자 치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학칙이라는 것도 "여성고용평등법"과 같이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휴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이것은 또 다른 의미심장함을 내포하고 있는데 학칙제정 논의과정 그 자체의 의미와 그 논의 주체가 억압받는 당사자인 여성, 혹은 성모순을 체감하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점,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 공동의, 하나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여성 배제적, 여성 억압적,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의 해석과 분분한 이야기들을 해체하고 여성중심의 성폭력에 대한 해석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여성권의 하나인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짧은 치마가 남성의성적 욕망을 자극한다랄지, 혹은 성기 중심의 사고로 성폭력은 반드시 성기가 삽입되어야 성립한다, 혹은 반항하지 않은 여성은 동의 의사가 있다는 식의 왜곡된 남성의식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 아닌 여성 당사자의 동의가 아닌 어떤 침해적 행동들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의식과 일상에서 여성자신들도 사회적 모순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인간적인 기본입장과 여성 정체성의 확보의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한다는 점등이 논의 과정과 그 자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성모순, 통틀어 성 모순을 체감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다 발전적인 여성 연대의틀들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짧은 내용이지만, 왜 학칙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간추려 올렸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어떠실는지... 언제나 인간해방의 한길에 당당히 투쟁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총련 사수! 전연대협 강화! 여성해방 인간해방 투쟁!

우리를 찾는 싸움, 그 길라잡이가 되는 도움닫기. 3000 여성 누리로!

제 14 대 자주적 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동아총여]성폭력 학칙제정틀거리 입니다.

학원내 성폭력에 대한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 놓는 것
2.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불이거나 보여주는 것
3. 페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것
4.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5.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6. 손이나 몸으로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하는 것
8.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9.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나 특전을 빌미로 강제 추행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시간강사, 족탁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징 계

제5조(교원의 징계) 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6조(직원의 징계) 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아학숙 직원 징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한다.

제7조(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를 한다.

제8조(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징계결과의 공고) 학교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징계결과를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성폭력 상담실

제10조(상담실 설치)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해당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하는 일
4.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12조(운영위원회 등)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직원 3명, 학생 3명, 상담실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실장이 그 의장이 된다.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칙

1. 01 규정은 199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